



신규 법률 문서 및 일부 중요한 세금 정책 업데이트

2024년 2월



Table of contents

본 뉴스레터에서 Grant Thornton Vietnam은 최근 발행된 세무, 세금계산서 및 노동 분야의 관련 법률 정책 및 지침을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감면.
2.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분류 시 위험 관리 적용에 관한 결정 번호 1388/QD-TCT
3. 해외 의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책을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한 6002/TCT-DNNCN 및 684/TCT-DNNCN
4. 법인세 정책을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신 5114/TCT-CS
5. 회사 분리 시 양도된 자산에 대한 조세 정책 시행을 안내하는 하노이 세무국의 공식 서한 번호 76785/CTHN-TTHT
6. 추가 세금 신고 서류의 시행을 안내하는 일반 세무부의 공식 서한 4955/TCT-KK 및 5090/TCT-KK
7.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한 5115/TCT-CS

1.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감면

2023년 10월 13일 재무부는 2024년 첫 6개월 동안 VAT 감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 11239/BTC-CST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VAT 감면을 시행합니다. 10%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과 2023년에 일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2%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단, 기타 규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정부는 재무부가 제안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승인의 결의안 제182/NQ-CP호를 발표하여 총리가 권한을 부여한 재무부 장관이 대신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3일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하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여 이 규정의 진행과 품질을 보장하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국회와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8일 정부는 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94/2023/ND-CP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령의 내용은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은 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정책을 적용할 때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어떤 상품이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상품이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분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2023년 6월 5일, 베트남 지원 산업 협회는 VAT 요율 결정에 대한 기업의 답변 및 안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발송 번호 21/2023/VASI-CV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15/2022/ND-CP 및 시행령 제44/2023/ND-CP를 발표했지만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세율로 분류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세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용할 때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분류 시 위험 관리 적용에 관한 결정 번호 1388/QD-TCT

2023년 9월 18일, 일반세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분류 및 세금 환급 후 확인 및 검사 계획을 세울 납세자 선정 시 위험 관리 적용에 관한 결정 번호 1388/QD-TC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일반세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분류 및 세금 환급 후 확인 및 검사 계획을 세울 납세자 선정 시 위험 관리 적용에 관한 결정 번호 1388/QD-TC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VAT 환급 서류를 분류하고 세후 환급 검사 및 검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 징후가 있는 납세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 지수를 발표하는 결정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그룹이 포함됩니다.
- ✓ 그룹 I: 세금 환급 전 검사 대상 VAT 환급 신청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지수 그룹.
- ✓ 그룹 II: 위험 표시 방법에 따라 VAT 환급 신청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지수 그룹.
- ✓ 그룹 III: 과세당국의 관리 요구사항에 따른 기준 지수 그룹.

- **VAT 환급 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다음의 경우 세금 환급 서류는 고위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환급 전 검사 수행)



2.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분류 시 위험 관리 적용에 관한 결정 번호 1388/QD-TCT

회계연도 시작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납세자는 고위험으로 평가된 연속 세금 환급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 이전 평가와 비교하여 진행 중인 위험 평가가 총 위험 점수가 다르거나 각 기준 또는 기준 지수의 위험 점수가 다른 경우.
- 이전 평가와 비교하여 진행 중인 위험성 평가가 각 기준 및 지표별 총점 및 점수가 동일한 경우 또는 이전 평가와 비교하여 진행 중인 세금 환급 서류가 각 기준에 대해 더 낮은 위험 점수를 가지므로 해당하는 총 위험 점수가 낮은 경우
 - (i) 만일, 이전 세금 환급 서류 검사 또는 환급 후 검사 결과, 납부할 세금 부족 또는 세금 환급 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허위 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다음 세금 환급 서류는 세금 환급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
 - (ii) 만일, 이전 세금 환급 서류 검사 또는 환급 후 검사에서 납부할 세금 부족 또는 세금 환급 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잘못된 신고가 발견된 경우, 다음 세금 환급 서류는 세금 환급 전에 검사를 받게 됨.
- ✓ 세금 환급 서류는 위험도가 중간 및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먼저 세금 환급을 받고 검사는 나중에 진행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일련의 평가기준 중 관세 준수와 관련된 기준과 관세청 정보입니다.



3. 해외 의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책을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한 6002/TCT-DNNCN 및 684/TCT-DNNCN

2023년 12월 29일, 세무국은 개인이 해외에 납부하지만 베트남 회사가 환급하는 의무 보험에 대한 공제 개인소득세(PIT)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우려에 답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 파견하여 기업 내 인력 이동으로 근무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와 일본 회사가 지급한 급여 및 임금 소득 중 해외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일본 회사가 지급한 경우(해외에서 지급한 의무보험 포함)는 베트남 회사에서 전액 변제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보험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지침 이전에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여 2024년 2월 27일 국세청은 공식 서신 6002/TCT-DNNCN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서한 684/TCT-DNNCN을 발행했습니다. :

베트남 납세 거주자인 외국인이 베트남으로 발령 시, 해외에서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으며, 베트남의 의무 보험과 유사하게 외국인의 본국 규정에 따라 의무 보험을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은 베트남에서 PIT 대상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됩니다.



4. 법인세 정책을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신 5114/TCT-CS

동일 그룹 내 기업간 자본금 보유권 양도에 관한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우려사항을 접수한 후 2023년 11월 15일, 국세청은 다음 지침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모든 자산, 법적 권리 및 이익(회사의 모든 출자금을 보유할 권리 포함)을 동일 그룹 내 회사에 합병하여 양도할 계획인 경우,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법인세 의무. 회사는 규정에 따라 외국 조직의 자본 이전 활동에 대한 법인세 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 분리 시 양도된 자산에 대한 조세 정책 시행을 안내하는 하노이 세무국의 공식 서한 번호 76785/CTHN-TTHT

2023년 10월 27일, 하노이 세무국은 기업분할 시 양도된 자산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우려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기업 분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 사업의 종속회계 구성원 단위 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분할 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양도된 자산에 자산 양도 명령서와 자산 출처에 관한 일련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독립적인 회계 단위 간 또는 동일한 조직이나 개인 내에서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가진 구성원 단위 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과 회원 단위 간 회계 장부에 기록된 가치에 따라 양도 시 고정 자산이 사용 및 감가상각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기업이 100% 소유하고 VAT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및 VAT를 신고하고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기업에 양도된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 추가 세금 신고 서류의 시행을 안내하는 일반 세무부의 공식 서한 4955/TCT-KK 및 5090/TCT-KK

추가 세금 신고 서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접수한 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하는 공식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 과세당국이 환급 전 검사에 대한 결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후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계산서가 다수 누락된 것을 회사가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법률 제31/2013/QH13호 제1조 6항 d항 및 조세 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47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 검사 후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어느 달에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그 달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때 신고하여 공제합니다. 사업자가 신고·공제 시 입력한 부가가치세액이 부정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 본부에서 세무조사 또는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신고·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 본부에서 검사 및 조사를 거쳐 세금 처리에 대한 결론 및 결정을 내린 후, 세금 신고 서류의 추가 신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a) 이 법의 142조 및 143조에 따라 납세자는 납부 세액을 늘리거나, 세금 공제 금액을 줄이거나, 규정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으로 면제, 감면, 환급 및 처벌 대상이 되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 추가 세금 신고 서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된 세액이 증가하거나 면제, 감소 또는 환급되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불만 해결 규정을 준수합니다..

7.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안내하는 세무국의 공식 서한 5115/TCT-CS

2023년 10월 27일, 하노이 세무국은 확장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우려에 답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 ✓ 회사가 2015년 6월 22일자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10조 4항에 명시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투자 프로젝트 인수를 기반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경우 재무부는 소유권 전환 후 투자 확대 및 법인세 인센티브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활동 확대에 따른 추가 소득은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관련: 회사의 확장 투자 프로젝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투자증명서는 2015년 7월 1일(효력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생산 소득에 대한 확장 투자 프로젝트로 인한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ntact

Please study the newly issued regu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compliance procedur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customs tax as well as reduce errors in the process of filing and preparing documents that could lead to additional tax obligations or administrative penalty.

Please contact the experts of Grant Thornton Vietnam for in-depth advice if you have any inquir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 and customs compliance.

Please visit our [Tax Hub](#) to view more informatio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Dang Hai Ha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1

E my.dang@vn.gt.com

© 2024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